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13

발의연월일: 2020. 8. 5.

발 의 자:서동용・홍정민・고영인

양정숙 • 안민석 • 인재근

윤영덕 · 김정호 · 박홍근

허 영・양이원영・윤재갑

유정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 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국립·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달리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 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(안 제29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71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하여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제4항제2호 중 "자문을"을 "심의를"로 한다. 제31조제3항제2호 중 "자문을"을 "심의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9條(會計의 區分 등) ① ~ ③	第29條(會計의 區分 등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	4
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	
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	
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·집행한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	2
따른 학교: 학교운영위원회의	
<u>자문을</u> 거친 후 이사회의 심	<u>심의를</u>
사·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	
장이 집행한다.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第31條(豫算 및 決算의 제출) ①	第31條(豫算 및 決算의 제출) ①
• ② (생 략)	•② (현행과 같음)
③ 學校에 속하는 會計의 決算	3
은 每 會計年度 종료후 다음	
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	
다만,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	
하지 아니하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	2

따른 학교: 학교운영위원회의	
<u>자문을</u> 거쳐야 한다.	<u>심의를</u>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